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8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백승아·한창민·최기상

김동아 • 복기왕 • 한정애

조승래 • 오세희 • 정진욱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때문에, 학생들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 진, 성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 생 건강검진의 결과도 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게다가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는 특정학년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 및 관리를 해야 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 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함과 동시에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 도록 하고, 건강검사와 관련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건강검사"를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검사, 신체의 능력검사,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검사 및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를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도"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사항목 및 절차"를 "검사항목 및 절차, 위탁"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건강검사"를 "건강검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u>건</u>	<u>건</u>
<u>강검사</u> 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검사,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신체의 능력검사, 건강조사, 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신건강 상태검사 및 건강검진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u>등을 포함한다)</u>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	<u> 구하고</u>
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u> 제2항에 따른	③ 교육부장관은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 등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 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 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 다.
- ⑥ (생략)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 검사의 시기, 방법, <u>검사항목</u> 및 <u>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 지 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④ <u>제1항에도</u>
<u>.</u>
⑤ <u>공단은</u>
⑥ (현행과 같음)
7
<u>검사항목</u>
<u>및 절차, 위탁</u>
 .
제18조(경비 보조) <u>①</u>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보조한다.

<신 설>

건강검사(같은 조 제2항에 따 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국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에서 지원할 수 있다.